

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

① 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	상 호		③ 성 명			
	년 월 일까지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	
1. 대손충당금 조정							
필요경비 산입액 조정	④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						
	⑤ 설정률						
	⑥ 한도액(④×⑤)						
	⑦ 필요경비계상액						
	⑧ 한도초과액(⑦ - ⑥)						
총수입금액 환입 조정	⑨ 충당금 기초잔액						
	⑩ 해당 과세기간 대손금상계액(<25>)						
	⑪ 환입할 금액 (⑨ - ⑩)						
	⑫ 환입한 금액						
	⑬ 과소환입(⑪ - ⑫)						
매출채권 등의 총액 계산	⑭ 계정 과목	⑮ 장부가액	<16> 기말현재 대손금부인 누 계	<17> 합계 (⑮ + <16>)	<18> 충당금설정 제 외 채 권	<19> 충당금설정 대 상 채 권	
	계						
2. 대손금 조정							
<20> 대손일자	<21> 계정과목	<22> 채권내역	<23> 대손사유	<24> 대손금액	<25> 충당금 상계액	<26> 필요경비 계상액	<27> 필요경비 불산입액
계	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작 성 방 법

1. ④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란 : <19>충당금설정대상채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2. ⑤설정률란 : 1/100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실적률 중 큰 비율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$$\text{실적률} =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<25> 및 <26>의 합계금액}}{\text{직전 과세기간의 ④의 금액}}$$
3. ⑦필요경비 계상액란 :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 보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과 해당 과세기간 충당금전입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4. ⑨충당금 기초잔액란 : 직전 과세기간말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을 기재하되,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5. ⑧한도초과액 : 필요경비 불산입하고, ⑬과소환입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.
6.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환입한 것으로 보아 ⑫환입한 금액란에 실지환입금액과 합하여 기재합니다.
7. <26>필요경비 계상액 :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, 해당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8. <27>필요경비 불산입액란 : 부당 상계한 대손금을 기재합니다.